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20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 강선우 · 김문수 · 김한규

서미화 • 이재관 • 김 윤

정을호 · 송옥주 · 김교흥

김윤덕 • 전진숙 • 이훈기

김영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군과는 달리 응급구조사의 경우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17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5(응급구조사 중앙회와 지부)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단체(이하 "응급구조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응급구조사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응급구조사중앙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

- 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의6(설립 허가 등) ①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의7(협조 의무)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응급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36조의8(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의 보건 및 응급의료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6조의7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5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응급구조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의2(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은 응급구조

사가 제55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5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 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17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17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제36조의5(응급구조사 중앙회와
	지부)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적 조직을 두는 단체(이하 "응
	급구조사중앙회"라 한다)를 설
	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법인으
	로 한다.
	③ 응급구조사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u>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u>
	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신</u>설>

- ⑤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⑥ 응급구조사중앙회는 제55조 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 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의6(설립 허가 등) ① 응급 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 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 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 야 한다.
 - ②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③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정관을

<신 설>

<신 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저 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5. (생 략)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7(협조 의무) 응급구조사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응급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 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의8(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은 응급구조사중앙회나 그 지 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의 보건 및 응급의료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6조의7 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 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레55조(응급의	미료증	종사.	자의	면허	•
자격	정지	등)	1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 7. (생 략) ② ~ ⑤ (생 략) <u><신 설></u> 5의2.응급구조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경우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은 응급 구조사가 제55조제1항제5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의5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 구할 수 있다.